

2. 通信市場 開放의 讓許案 提出

- (WTO 基本 通信 協商) 本 協商의 重點 課題는 外國人 投資의 自由化 措置와 競爭 促進的인 規制政策의 確立에 있음
- (韓國의 讓許案 內容) 98년부터 有線 通信 事業에 對한 外國인 투자 및 동일인 지분을 총지분의 33%까지 허용하고, 事業者數, 外國人 任員數, 回線 再販賣 등과 相關한 制限을 대부분 폐지함. 한편 通信委員會로 하여금 공정 경쟁을 감독함
- (讓許案 評價) 外國人 投資 開放은 협상 주도국들의 주장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通信委員會를 통한 規制는 獨立性과 公正性에 對한 시비를 불러올 수 있음
- (向後 協商 課題) 향후에는 先進國과의 雙務協商이 주로 이루어질 것 이며, 美國은 전반적인 開放 擴大 및 실질적인 競爭 保障을, 유럽은 PCS 사업에 對한 政府의 單一 規格 選定을 문제삼을 것임

○ WTO 基本 通信 協商

외국인의 투자 자유
화와 자유 경쟁을
보장하려는 WTO
통신 협상 진행

- 이번 협상은 96년 4월까지 타결한다는 계획으로 外國人 投資 自由化 措置와 自由 競爭을 보장하는 規制 政策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
- 현재 참여 국가는 31개국 45개 정부이며, 10여개 개도국을 제외하고는 양허안을 제출한 상태임

○ 韓國의 讓許 內容

구 분	양허 내용과 개방 시기
외국인 지분 제한	유무선 33%, 단 한국통신은 20%,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주식 취득은 동일인 3% 합계 15%로 제한(98년)
동일인 제한	유무선 33%(98년)
대주주 제한	현행대로 금지
임원수 제한	폐지(98년)
사업자수 제한	주파수 여유가 있는 한 제약 없음
회선 재판매	국내에 회사를 설립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전면 자유화(98년), 전용망과 공중망의 접속을 통한 음성통신 서비스는 2001년부터 자유화
공정 경쟁 제도	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통신위원회에 재정 신청 가능

○ 讓許案의 評價

전반적인 개방 수준 협상 주도국들의 요구 수준에 크게 미달

통신위원회를 통한 규제활동은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 유발 가능

- 投資 開放의 전반적 수준은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함
 - 지분 소유 제한은 주요국에서는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서,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출했던 일본도 이 부분에 대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
 - 특히 대주주 금지 조항은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음
 - 소규모 투자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회선 재판매를 통한 음성 통신 사업의 2001년 개방은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높음
- 通信委員會를 통한 규제 업무는 규제 기관의 獨立性에 대한 시비를 불러올 수 있음
 - WTO 통신협상에서는 독립 기관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제도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
 - 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산하 기구로서 독립성과 일관적인 경쟁 정책에 대한 시비를 부를 수 있음

○ 向後 協商 課題

미국 중심으로 한 쌍무 협상이 중심

유럽 국가들은 자신들과 다른 단일 기술 표준의 제정에 이의 제기 예상

- 96년 부터는 開放이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美國을 중심으로 하는 雙務協商이 주로 이루어 질 것임
 - 미국은 자국 수준의 투자 개방과 실질적인 내국인 대우 및 공정 경쟁의 보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음
 - 지난 2월에는 자국의 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그 국가들의 개방 수준을 평가하여 허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. PCS(개인휴대통신) 사업을 중심으로 미국 진출을 시도하는 한국에 대해 이를 통한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임
- EU는 開放 水準 보다는 우선 技術的인 규제의 철폐를 요구할 것임
 - 특히 한국의 양허안에는 PCS의 접속 기술을 CDMA로 단일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, 유럽은 TDMA 기술에 앞서 있으므로 한국의 단일화 방안을 문제삼을 것임 (정 반 석)